

수원지방법원 2020. 11. 11 선고 2019나84345(본소), 2020나52153(반소) 판결

[공사대금 · 정산금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0. 11. 11 선고 2019나84345(본소), 2020나52153(반소)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19. 9. 5 선고 2019가단538360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A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

담당변호사 문성현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강남

담당변호사 임신혁

변론 종결2020. 10. 21.

판결 선고2020. 11. 11.

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9. 9. 5. 선고 2019가단538360 판결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.
2. 피고(반소원고)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.

3.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본소, 반소를 통틀어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 78,75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2. 1.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

원고는 피고에게 40,632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0. 16.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, 피고는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.

나. 원고는 2018. 10. 1. 피고와 C 건축공사 중 철골공사(내화)(이하 '이 사건 공사'라 한다)에 관하여 공사대금 605,00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으로 정하여 원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

같다.

4. 공사기간 : 착공 2018. 10. 1., 준공 2019. 12. 31.

6. 대금의 지급

나. 기성부분금: (1) 월 1회

(2) 월 30일 마감, 기성지급일은 시공사 결제조건에 따름

(3) 지급방법 : 현금 100%

8. 계약물량 외 공정은 사전협의한다.

- 내화페인트(2시간) 25,000m²: m²당 22,000원

- 상도 및 내화작업을 위한 모든 BEAM 및 BOLT touch-up 포함조건이다.

- 자재청구시 원사업자(피고)에서 지급하고, 정산시 공제한다.

- 보양작업은 공사에 포함된다.

13. 시공완료 후 변경된 물량은 정산한다.

다. 원고는 2018. 10. 22.경 피고로부터 바탕면처리 및 광명단도장 공사(이하 '이 사건 추가공사'라 한다)를 추가로 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,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합계 78,750,000원(= 바탕면처리공사 52,500,000원 + 광명단도장공사 26,250,000원)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.

라. 원고는 2018. 12.경 위 견적서에 따라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료하였고, 2018. 12. 31.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한 기성금을 청구하였다.

마. 한편, 원, 피고는 2019. 3.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내화페인트 수량을 23,454m²로 정산하기로 합의(이하 '이 사건 정산합의'라 한다)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원고가 2018. 10. 22.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공사를 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, 이에

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합계 78,750,000원의 견적서를 피고에게

제출한 사실, 피고가 위 견적서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서 공사를 요청하고, 원고는 위 견적서에 따라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 위 견적서 내용대로 원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.

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78,75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1) 먼저,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 중 바탕면처리공사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요청하기는 하였으나,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의 인건비 중 50%에 해당하는 10,980,000원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, 10,980,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바탕면처리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의 인건비 중 50%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

2) 다음으로,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 중 광명단도장공사의 경우 이 사건 계약서의 8항의 "BEAM 및 BOLT touch-up 공사"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이므로, 이 부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광명단도장공사비용이 포함된 견적서를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오히려 갑 제6,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, 위 광명단도장공사는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"BEAM 및 BOLT touch-up 공사"와는 별개의 공정으로 보일 뿐이며, 달리 위 광명단도장공사가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정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

다. 소결론

피고는 원고에게 78,75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기성금 청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. 2. 1.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. 7. 22.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의 주장

이 사건 정산합의는 피고가 발주자와 원고 사이의 최종 정산결과에 따라 다시 정산하기로 한 '가(假)정산 합의'이다.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 이후 발주자와 내화페인트 수량에 관하여 21,108m²로 정산하였다. 피고와 발주자 사이의 정산수량에 맞춰 원고에게 초과지급된 부분을 계산하면,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정산금은 51,612,000원[단가 22,000원 × (23,454m² - 21,108m²)]이 된다. 피고는, 위 정산금 채권으로 이 사건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함과 동시에 상계하고 남은 정산금 40,632,000원¹⁾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소로 구한다.

나. 판단

이 사건 계약서에 '시공완료 후 변경된 물량은 정산한다'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, 원,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원, 피고가 발주자와 원고 사이의 내화페인트수량에 관한 최종 정산결과에 따라 다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위와 같은 재정산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과 반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.

4. 결론

제1심판결은 앞서 본 본소에 관한 판단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본소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,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장재윤

판사전호재

판사유성현

1) (= 피고가 주장하는 정산금채권 51,612,000원 -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채권 10,980,000원)